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국방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의 협의에 의해 전술항공작전기지를 민간에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 개정(법률 제20015호, '24.1.16.공포)됨에 따라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의 협의 사항 및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전술항공작전기지를 민간에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의 협의 사항 및 절차 조항 추가 신설(안 제13조 2 제1항, 제2항)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 간 전술항공작전기지 민간 사용 협의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협의 절차 등을 규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국토교통부 등과 합의필요함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00. 00. ~ 2024. 00. 00.) 결과, 특기
할 사항 없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2 제1항과 제 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13조의2(민군 간 전술항공작전기지 사용 협의) ① 법 제 13조의2 제 2항에서 “협의를 하는 경우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민항기의 이용 가능한 군 항공기지의 지정 및 시설 요건
2. 민항기 운항 신청 및 취소 요건과 절차에 관한 사항
3. 민항기가 사용할 수 있는 군 항공기지 시설의 범위
4. 군 항공기지 시설물 이용·설치·보수에 관한 사항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에 관한 사항
6. 비용부담과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7. 항공안전 증진을 위한 협력 사항
8. 그 밖에 협의를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3조의2 제2항에서 “협의 절차”는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 간 비행장 사용협정 체결을 위한 절차를 말한다.

1.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제1호부터 8호까지에서 규정된 사항을 포함한 비행장 사용 협정서를 작성해서 상호 교환한다.

2.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기타 전술항공작전기지 시설의 일부를 민간에서 사용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는 비행장 사용 협정서에서 정한다.

부 칙(2024.00.00.)

제 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존 비행장 사용협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 간의 비행장 사용협정으로 정한 사항은 제13조의2의 협의절차에 따라 정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 13조의2(민군 간 전술항공작전기지 사용 협의) ① 법 제 13조의2 제 2항에서 “협의를 하는 경우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민항공기의 이용 가능한 군 항공기지의 지정 및 시설 요건 2. 민항공기 운항 신청 및 취소 요건과 절차에 관한 사항 3. 민항공기가 사용할 수 있는 군 항공기지 시설의 범위 4. 군 항공기지 시설물 이용·설치·보수에 관한 사항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에 관한 사항 6. 비용부담과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7. 항공안전 증진을 위한 협력 사항 8. 그 밖에 협의를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3조의2 제2항에서 “협의 절차”는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 간 비행장 사용협정 체결을 위한 절차를 말한다. 1.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제1호부터 8호까지

	에서 규정된 사항을 포함한 비행장 사용 협정서를 작성해서 상호 교환한다. 2.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기타 전술항공작전기지 시설의 일부를 민간에서 사용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는 비행장 사용 협정서에서 정한다.
<u><신 설></u>	부 칙(2024.00.00.) 제 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존 비행장 사용협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 간의 비행장 사용협정으로 정한 사항은 제13조의2의 협의절차에 따라 정한 것으로 본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방부 탄약수송관리과	
연 락 처	(02) 748 - 5758